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

※ 작성시 참고사항

-  처리된 부분은 계약자별로 해당내용을 표기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담보는 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만을 명시
- “1. 보험계약 개요” 부분의 가입된 특별약관명은 가입한 모든 특별약관명을 모두 명시하고, 그 특별약관명 나열 순서는 운전자범위특약, 운전자연령특약, 기타 특약 順으로 기록
(가급적 중요도 및 계약자가 특히 알아야 할 사항 순으로)
- “3. 보험계약의 주요보장 내용”중 미가입한 담보는 미가입 또는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표시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동법 하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및 상품설명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회사가 상품설명서에 필요하다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설명가능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표준양식에 따라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00손해보험(주)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 보험계약 개요 (예시)

☐ 보험회사	○ ○ 화재(주)
☐ 모집자	△△지점, ☆☆보험대리점(모집자 : 홍길동, 연락처 : 02-3786-1234)
☐ 보험상품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기간	2008. 1. 16.부터 2009. 1. 16.까지
☐ 피보험자동차	01가1234 (뉴EF소나타 2004년식)
☐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 보험계약조건	
▷가입담보종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가입특별약관	가족운전한정특약, 만30세이상운전 한정특약, 긴급출동서비스특약
☐ 보험료 납입기간*	자동이체 연속 6회납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기재)

2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기입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고객은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손해보험(주) 계약심사부 (전화 : 3786-1234)
- 가까운 영업점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손해보험(주) 고객플라자 (전화 : 3786-1234)

나.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저희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을 기재하여 설명가능

(예 시)

구분	지급사유	보험료	가입금액 (보상한도)	유의사항
대인 배상 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228,630원	사망 : 최고한도 1억 5천만원, 최저한도 2천만원 후유장해 :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내에서 후유장해등급별 지급 부상 : 최고한도 3천만원,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임
대인 배상 I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	70,040원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 무한	영업용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배상 II(보험가입금액 1억원)까지 의무보험임

	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186,110원	1사고당 최고한도 : 1억원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임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13,850원	사망·후유장해 : 최고한도 1억원 부상 : 최고한도 15백만원,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4,290원	최고한도 2억원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274,960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00% (최소 00만원 / 최대 00만원)	차량가액 한도내 보상
긴급출동서비스	-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14,400원		상품에 따라 보험기간중 이용회수 제한
총 보험료		820,280원	초회보험료	820,280

주) 실제 가입된 특약을 기재하며 회사가 필요한 문구등을 추가로 삽입 가능

4 자동차보험료의 계산방법

가.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boxed{\text{납입할 보험료}} = \boxed{\text{기본 보험료}} \times \boxed{\text{특약 요율}} \times \boxed{\text{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pm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times \boxed{\text{특별 요율}} \times \boxed{\text{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times \boxed{\text{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나.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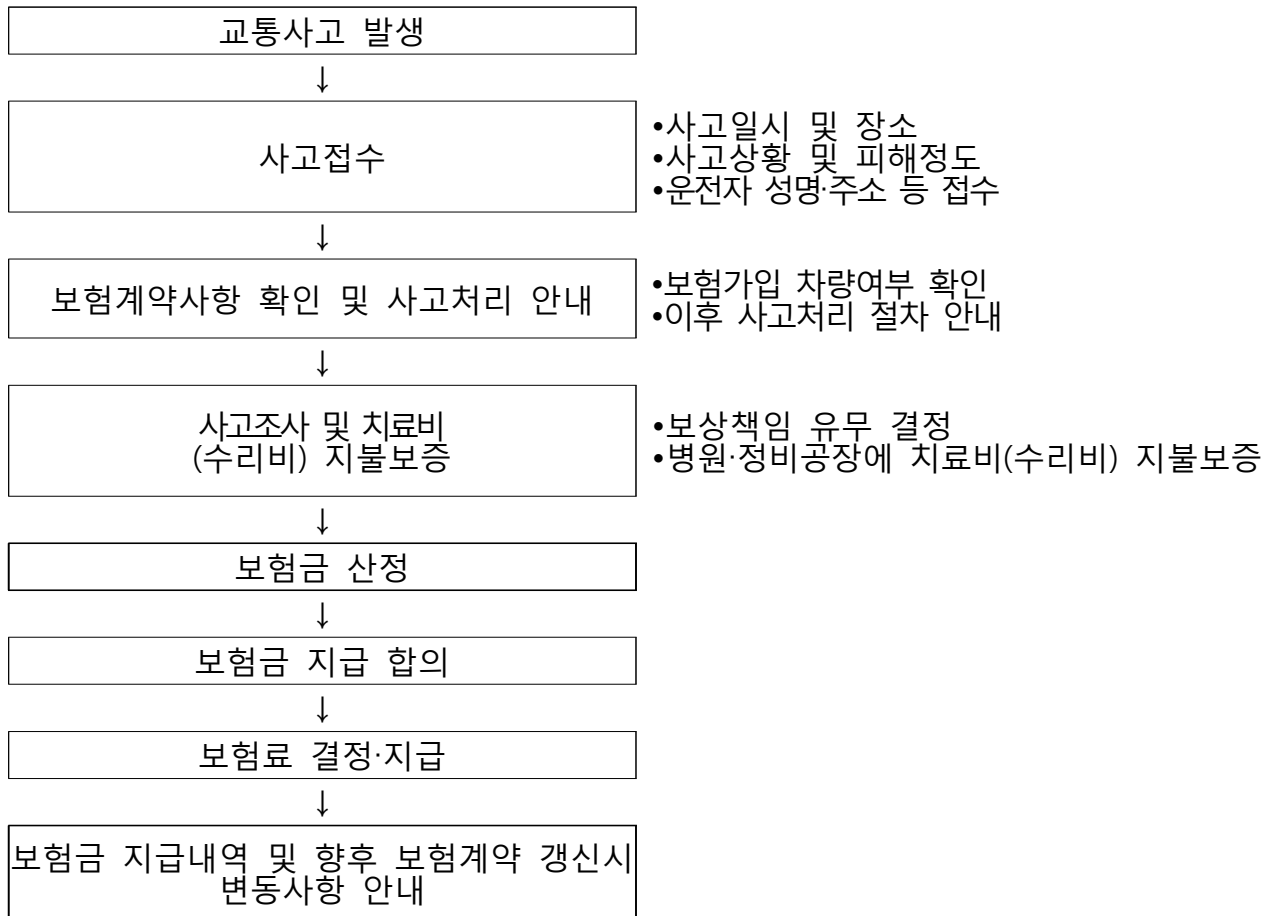
다.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5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6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가입하신 연령특약의 해당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며, 해당연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 I 은 운전자연령에 영향받지 않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해당연령은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신 경우 보장하는 범위는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④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⑤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에 한정하며,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는 동 약 관상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형제·자매도 운전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관련 법상 가입금액 1천만원*)이지만 운전자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연령제한 특약을 위반한 경우 대인배상 I (책임보험)과는 달리 보상받지 못합니다.

* 2016.4.1 이후 사고에 대한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은 2천만원임

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받는데, 치료비가 전액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치료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전부손해(차량이 완전히 파손)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시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은 1사고당 대인배상 I·II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무면허운전은 1사고당 대인배상 I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사고시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지만,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 제기시에는 확정판결을 적용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시 가입 보험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 기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

※ 사례(예시)를 참조하여 상품별 기본계약 및 특약의 약관내용에 맞게 수정 및 가감하되, 주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 시)

①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 1

A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을 가입하였음. 해당차량으로 A의 배우자인 B가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해당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위 사례에서 B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

② 운전자 범위 제한 사례2

C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가족운전자 한정운전)을 가입하였음. C의 친동생인 D가 해당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위반으로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담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해당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위 사례에서 D는 특별약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불가(다만, 대인배상 I 은 보상 가능)

③ 운전자 연령 제한 사례

E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을 가입하였음. E의 자녀인 F가(만 24세) 해당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연령 한정 특별약관 위반으로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담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운전자 연령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특별약관의 운전자 연령(ex : 만 26세, 만 30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위 사례에서 F는 만 26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다만, 대인배상 I 은 보상 가능)

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나.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등의 경우(약관 참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약관 참조)

-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보험기간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와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합니다.

라. 보험가입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피보험자가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바. 기명피보험자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 보험료의 할증

사고발생시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text{보험료 할증요소} = \text{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변동} \times \text{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변동}$$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명칭은 사별 일부 상이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내용(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사고점수 부과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변동으로 보험료 할증 가능)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피보험차량별 개별평가)
 - *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을 적용

따라서, 사고발생시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보험료 50만원을 납입하던 고객이 직전 3년간 무사고(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약10% 할인적용)였다가 지급보험금 100만원의 물적사고 발생시,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한 경우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만 변경 적용되어 기존대비 8만 3천원 할증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50만원 가입한 경우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모두 변경 적용되어 기존대비 약 11만 2천원 할증

구 분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	
	200만원	50만원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변동 無	+5%* (1등급 변동)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3년 무사고 할인 미적용 : +10% - 사고건수 할증적용 : +6%	
총 보험료	58.3만원	61.2만원

* 실제 개인별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할증률은 상이

** 직전3년간 무사고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할인미적용에 따른 요율인상이 없으나, 사고횟수 누적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도 변동

※ 상기 예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 갱신 시점의 실제 적용률을 따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 갱신계약 체결시, 물(物)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시 예)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하락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하락

- 가.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로 하여금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나. 만기예고 및 안내장은 청약서상 고지하신 주소로 발송되오니,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주시어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서상 고지된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라.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보험가액(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마.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서비스 제공한도가 있으므로 보험기간중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동 한도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특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 바. 대리운전이용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배상 I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아. 실손담보 보험*(특약)에 관한 중요사항

- * (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

(예 시)

* 실손담보 보험이란?

-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다수보험이란?

-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실손담보)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비례보상이란?

-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담보 사전조회**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체결시 보험사가 '실손담보 보험 사전조회'를 통하여 조회한 내역(담보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음주·무면허운전, 차량·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차.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사항

(예 시)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0000 - 0000

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예 시)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약) 안내

(예 시)

1.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특약)을 말합니다. (일반 상품과 보장내용은 동일)

2.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

- ① 기초생활수급자(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② 아래 인적·차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구비서류 : 소득, 가족관계 등 증명)

인적요건	연소득 4,0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이며 만 20세 미만 자녀를 둔, 만 30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차량요건	승용·화물차	소유 자동차(비사업용)가 1대만 있고, 그 차량이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
	이륜차	소유 이륜차(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가 2대 이하이며, 그 이륜차가 배기량 100CC이하로서 최초 등록 후 4년 이상 경과

※ 고령자(만65세 이상) 및 장애인(3급이상)인 경우 일부요건이 완화됨

파.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안내

1.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이란?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상품(특별약관)을 말합니다.

2.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안내

1.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이란?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는 상품(특별약관)을 말합니다.

2. 가입대상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도난사고 등 침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전부손해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자기부담금의 최소·최대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시설물(교통안전시설, 가로수, 가로등 등)을 파손한 경우 해당 지자체 등 시설관리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사실의 통보 및 보험처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칙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품별 자주발생하는 민원사항을 1페이지분량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여 안내(기업성 보험, 단체보험은 제외)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 신상품은 유사상품의 주요민원을 반영*

*출시 6월 경과후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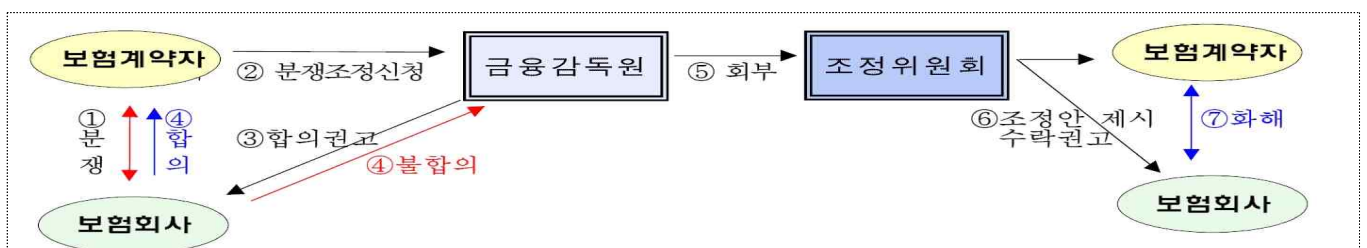
유형 : 운전가능범위 관련

사례 :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정하는 가족한정특약을 가입함. 이후 A씨의 동생이 A씨 차량을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동생이 운전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되어 불만 제기

* 유의(참고) 사항 : 최근 운전자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특약이 개발되어 판매 중이므로 보험가입시에 참고한다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 모집자(연락처 : 영업소 전화)와 우리 회사(연락처 : 대표 전화)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라.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설명서는 단지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설명서는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단계 설명사항

①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가. 모집자 : 홍길동

나. 소 속 : △△지점, ☆☆보험대리점

다. 연락처 : 02-3786-0000

②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

(보험설계사의 경우 예시)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 계약의 승낙절차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번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소속, 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면책, 감액 등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5	계약의 해지 및 무효, 해지시 보험료의 환급 등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6	예금자보호, 주요 민원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기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모집인 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및 권한(보험료·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등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사항
8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담보)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사망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주1) 회사가 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문구 삽입 가능

주2) 제8호의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회사별 보험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필 서명란을 알아보기 쉽게
박스 등 하이라이트 처리

▷ 통신판매 이외의 상품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등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홍길동(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이만기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 ××. 보험설계사 ○○○ (인)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설계사 홍길동(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보험계약자 ○○○(인)

▷ 통신판매 상품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 동 설명서는 이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을 참조하셔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상담원 홍길동(은)는 위 내용 및 이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이만기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함을 20xx. xx. xx일에 녹음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계약자께서는 20xx. xx. xx일에 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전화로 설명을 받으시고 음성녹음을 통해 설명 받고 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 콜센터(1588-xxxx)로 연락하시면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M상품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 동 설명서는 이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을 참조하셔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계약자께서는 20xx. xx. xx일에 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xxxx.co.kr)상에서 읽어보시고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